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5. 1. 선고 2015고단 2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광 주 지 방 법 원 목 포 지 원

판 결

사건 2015고단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문선주(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 한진택배의 물품배달 기사이다. 피고인은 택배 물품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 22:45경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 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부인을 보면서 용두질을 해소 부인과 함께 합궁을 해소 부인을 참 사랑하오"라는 글을 비롯하여, 2014. 6. 15.부터 2014. 8.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 22: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E)로 "수리수리 마수리 부인 자태가 참 장중하시군요, 부인에 혼령이 나를 참 인 자하고 용맹하게 하는구려, (중략) 부인과 나에 관계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비밀로 할 생각이요 C 아내여 사랑하오 백룡 A 남편 올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10-0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전송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나 사진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형석